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the Public Library for the Disabled Persons: With a Special Regard to the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오 동 근(Dong-Geun Oh)**

윤 수 진(Su-Jin Yoon)***

〈 목 차 〉

I. 서론	IV.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 실태분석
II. 선행연구 분석	1.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및 공공도서관의 현황
III.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설 및 공간계획의 설치기준	2.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 실태
1. 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3. 종합적 분석 결과
2. 공공도서관 장애인시설 관련 법적 근거와 내용	V. 결론 및 제언
3.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의 설치기준	

초 록

이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시설 관련법규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고유영역, 편의시설영역, 동선체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간구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관련공간의 배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시설, 공공도서관, 대구시공공도서관, 공간구성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the plan to improve the information gaps of the disabled persons. After examining the legislation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rsons and former studies, it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the standards of unique space in public library, convenience facilities and traffic line. It also analyzed present conditions of five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lready having separate rooms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rsons. The result shows that arrangement of disabled person's space and general convenience facilities are insufficient. Some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s seems to be equipped just to suffice the standards. Detailed legislation or guidelines concerning facilities for them should be developed as soon as possible.

Keywords: Disabled Pers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rsons, Public Library, Space Composition

* 이 논문은 2008년도 2학기 계명대학교 대학원학생 학술연구장학금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제1저자)

***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sooa0000@kmu.ac.kr)(공동저자)

• 접수일: 2009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I. 서론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의 6억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의학발전, 전쟁 그리고 노령화,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1) 우리나라도 2005년 170만여명, 2006년 190만여명, 2007년 210만여명, 2008년 3월 213만여명으로 등록되는 장애인수가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일찍이 정부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2007년 3월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끊임없는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들의 진정한 요구 측면에서의 고려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쟁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데 적합하도록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장애인 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서관은 장애인이 스스로 일어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는 도서관은 핵심적인 기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도 일찍부터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한 예로 1995년 유네스코공공도서관선언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봉사는 연령이나,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평등하게 이용되는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된다”라고 하였으며, 2) 『도서관법』은 모든 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등을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3)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도서관들이 비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책을 펴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시설에 관한 연구도 편의시설 영역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루며 공공도서관 고유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시설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서관의 진정한 발전은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보다 가장 필요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의 빈곳을 채워주는 데 있다'4)는 점에 착안하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901/> [인용 2009. 2. 3].

2)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la.kr/data/reference/unesco.asp>> [인용 2009. 1. 6].

3) 도서관법 제1조(일부개정 2006. 10. 04 법률 제8029호).

4) 이영숙,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도서관문화, 제48권, 제4호(2007. 4), pp.32-37.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의 개념 및 유형, 장애인 시설 관련법규, 선행연구 등에 대한 내용을 문헌을 통해 고찰한 뒤, 대구광역시의 9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실을 배치하고 있는 5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조사를 통해 장애인 시설 및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한 15가지 장애유형 중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으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안면장애인의 이용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둘째,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5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모든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방법은 사례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한 심층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II. 선행연구 분석

장애인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은 문헌정보학분야의 색인을 조사하여 본 결과 1986년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봉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논문⁵⁾이 최초로 발표된 이래 2008년 12월 말까지 발표된 논문은 대부분 시각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설 및 공간구조에 관한 실증적 논문은 부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건물에서의 장애인 시설에 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분야와 행정학분야, 건축학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초기에는 편의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997년 조철호는 국내에서 연구된 편의시설의 기준들과 미국의 ADA,⁶⁾ 일본의 동경도 복지거리 설치지침을 비교·분석하여 연속된 이동통로 상에서의 빠짐없는 장애요소의 추출과 편의시설 기준항목을 설정하고, 나아가 상세한 부분적 기준들을 분석하여 세부항목으로 정리함으로써 통합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⁷⁾

2000년 강병근은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모두를 위한 건축(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내세워 장애인 편의시설의 표준적인 설계지침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을 구체화하기위해 장애의 특성과 장애인들의 시설별 이용특성을 고려한 법 적용의 강도 다양화 등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다.⁸⁾

5) 손문철, 김영귀.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13권(1986), pp.29-58.

6)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7) 조철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경원전문대학논문집, 제17권, 제1호(1995), pp.133-153.

8) 강병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6권, 제11호(2000), pp.7-16.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같은 해에 전주섭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는 양적·질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수요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 기준, 행정, 문화적 관점에서 모형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적 복지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2005년 이후, 공공기관의 장애인관련 시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구도 출현하였다.

2005년 김보일은 『편의증진법』의 제정 전·후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도서관에 적용한 결과 법제정과 관계없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편의증진법』과 미국의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고하여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공건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로 4구분하여 총 164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은 관람석·열람석과 작업대·접수대 그리고 서가 및 기타로 양분하여 총21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¹⁰⁾

2007년 이영숙은 2007년 3월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으로 말미암아 2008년부터는 과도한 부담이나 업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시설,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였다.¹¹⁾

같은 해에 고근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8년 『편의증진법』의 시행 전·후에 개관한 경기도 가평 및 강원도 춘천 지역의 4곳의 공공도서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아직까지 내부 및 외부 편의시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으며 또한 시설관계자들에게도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와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건축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알아보기 쉽게 시설별 규정집을 만들어서 배부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²⁾

2008년 최서윤은 서울시에 위치한 2000년 이후에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한 공공도서관 9곳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인 의무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인 설치에 머무르는 경우, 세부적인 설계기준의 제시가 미흡하여 잘못 설치된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더라도 사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¹³⁾

9) 전주섭,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00).
10) 김보일,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5).
11) 이영숙, 전제논문, pp.32-37.
12) 고근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7).
13) 최서윤, 장애인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에 관한 장애인 시설의 연구는 대부분이 편의시설에 관한 것이며, 대상지역도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및 강원도로 제한적이었다. 도서관 고유영역의 시설에 대한 연구와 서울, 경기 및 강원도 이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Ⅲ.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설 및 공간계획의 설치기준

1. 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이 다양한 장애의 원인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장애의 원인이 다양해짐으로써 장애의 유형이 변화하고 결국 장애인에 대한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장애인을 외적인 불구자로만 여겼지만 현대의 장애인이라 지칭되는 사람들은 신체적·정신적 결함 뿐 아니라 어떤 장애로 인해 사회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¹⁴⁾에서도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까지 장애유형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총 5가지로 제한하였지만, 2000년에는 뇌병변, 신장, 심장, 정신, 발달장애까지 확대하고 2003년에는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의 5가지를 추가하여 현재 총 15가지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장애의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장애의 유형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등급도 있다. <표 1>¹⁵⁾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는 장애의 유형으로, 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누고 있다.

<표 1> 장애의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장애유형 중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이들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하지만,

1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일부개정 2008. 02. 29.) 법률 제8852호.

15)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일부개정 2008. 12. 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외형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고, 정신적인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도서관 시설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지팡이, 목발 등의 보조기구에 의지하는 보행장애와 휠체어장애, 팔 혹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로 구분된다. 보행장애의 경우 주로 건물 내에 보행로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휠체어장애의 경우에는 건물바닥의 '턱' 높이의 장애와 활동소요공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2~3배 더 필요하다.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으로 구분된다. 뇌병변장애도 지체장애와 같이 휠체어 사용이 많으며 휠체어 사용시 앉아있는 상태이므로 손이 닿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미약한 시력을 지니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만을 볼 수 있는 약시와 음향이나 촉각, 후각, 미각에만 의지하는 전맹으로 구분된다. 이 장애를 가진 자는 머리높이의 장애물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굽은 길에서는 방향감각을 잃기가 쉽다.
- 청각·언어장애: 청각·언어장애는 대부분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농이(聾耳)라고도 한다. 종류로는 보청기에 의지하는 난청, 시각·후각·촉각 정보에만 의지하는 청각상실, 발음이 바르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다. 이 장애를 가진 자는 상대방의 입모양을 관찰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조명 및 채광이 중요하다.
- 안면장애: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말한다. 이 장애를 가진 자는 신체활동이 정상인과 다름없으나 의사소통에서 약간의 어려움과 정상인의 혐오감 의식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한이 가해진다.

2. 공공도서관 장애인시설 관련 법적근거와 내용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또 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대는 장애인 정책이 확대·발전되어 장애인정범위의 확대, 편의시설 설치 확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 가운데 도서관의 장애인시설과 관련하여 법적근거로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골자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16)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별표1](일부개정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김보일, 전개논문, pp.7-12.를 참고하였음.

〈표 2〉 국내의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법적근거와 주요내용

법률	조문	구체적인 내용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편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및 시행령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별표1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 안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대상시설)-별표1	교육연구시설: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별표2	① 매개시설: 의무(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② 내부시설: 의무(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③ 위생시설: 의무(대변기), 권장(소변기, 세면대) ④ 안내시설: 의무(접자블록), 권장(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⑤ 기타시설: 의무(접수대/작업대)

〈표 2〉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법규에서는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시책마련 의무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도서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만 나타나 있다.

3.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의 설치기준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에 대한 설치기준들은 앞서 살펴본 『도서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도서관 시설영역에 관한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되었다.

최서윤¹⁷⁾은 공공도서관 고유의 영역을 도서열람, 전자정보열람, 전시 및 공연, 교육 및 집회로 구분하고 편의시설영역은 외부, 매개, 이동, 위생, 경보안내, 기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김보일¹⁸⁾은 도서관의 고유영역에 대해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서가 및 기타로 세부적인 사항을

17) 최서윤, 전계논문, pp.38-47.

18) 김보일, 전계논문, pp.16-41.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분류하였으며, 편의시설은 매개, 이동, 위생, 경보안내로 나누었다. 고근재¹⁹⁾는 공공도서관 고유의 영역은 고려하지 않고 편의시설영역만 매개, 이동, 위생, 경보안내,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성의 설치기준을 도서관 시설영역의 선행연구와 법률을 참고하여, 도서관고유의 영역과 편의시설 영역, 동선체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특히 동선체계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용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표 3〉 장애인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분류

목 적	도서관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최서윤	김보일	고근재	제 안	
도서관 고유의 영역	열람석	-	도서열람 전자정보열람 전시 / 공연 교육 / 집회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서가 및 기타	-	장애인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열람실	
편의 시설 영역	외부	-	보도 및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	
	매개	-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경사로	법률과 동일	법률과 동일	
	이동	-	출입구 / 복도 계단 / 승강기	계단 / 승강기 복도 및 통로	출입구 / 복도 계단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출입구 / 복도 계단 /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위생	-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경보 안내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선형블럭 호출벨 점자촉지도 등	점자블럭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점자블럭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	-	접수대/작업대	휴게실 / 식당 매점 / 카페	-	열람석 / 접수대	-
동선 체계 영역	-	-	-	-	-	외부 ⇄ 내부 각 실 ⇄ 이동시설 각 실 ⇄ 화장실 장애인실의 위치	

19) 고근재, 전계논문, pp.16-30.

가. 도서관 고유의 영역²⁰⁾

도서관 고유의 영역은 장애인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열람실로 구분된다. 각 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실

장애인실은 점자도서와 시청각자료 등을 열람, 대출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다. 장애인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에는 면적, 열람석, 출입문, 냉·난방기, 채광 및 조명, 바닥마감재, 보유시설 등에 대한 것이 있다(표 4 참조).

<표 4> 장애인실 시설기준

구 분	내 용
면 적	휠체어의 크기를 고려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실의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열람석	장애인열람석은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열람석의 1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자동개폐기 장치가 없다면 출입문 스위치의 높이를 휠체어 앉은키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수동문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관리자 호출벨 또는 인터폰을 설치해야한다.*
냉·난방시설	면적과 최대 수용인원을 산정하여 설치하고, 환풍기나 창문을 두어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채광 / 조명	창문을 설치하여 채광이 잘되게 하며, 조명은 효율이 좋도록 천장높이를 가능한 낮게, 조명시설은 절전용 형광등, 밝기는 300~500럭스로 설치해야한다.*
바닥마감재	넘어져도 쉽게 다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보유시설	약시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녹음도서재생기, 휠체어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 타	장애인실 내에 사서가 없다면 관리용 카메라나 인터폰, 비상벨, 다른 실과 연결된 통로 등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매체를 설치해야한다.*****

*최서연, **김보일, ***고근재, ****도서관법,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

(2)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은 종합자료실·어린이열람실로서 도서를 열람하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각 공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서가의 높이, 서가 간 간격, 출입구, 장애인열람석, 바닥마감재, 서비스카운터의 위치, 복도 및 통로, 검색대 등이 있다(표 5 참조).

나.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 내부, 위생, 안내의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 매개영역은 도서관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할 때 출입구 직전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영역이다. 내부영역은 도서관 내부에서 장애인들이 이동할 경우 사용하는 영역이다. 위생영역은 장애인전용화장실을 말하며, 안내영역은 도서관 내·외부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표 6 참조).

20) 도서관 고유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시설기준은 최서연, 전계논문, pp.38-47; 강병근, 전계논문, pp.10-15; 도서관법 시행령, 동 시행령 제3조 [별표1]을 참고하여 제안하였음.

〈표 5〉 일반자료실 시설기준

구 분		내 용
서가	높이	어린이열람실의 경우 높은 서가는 5단, 낮은 서가는 3단으로 구성하며, 종합자료실은 휠체어에 앉은 높이 최대 1.4m와 손의 도달범위인 1.8m를 고려하여 서가의 높이를 결정한다.**
	간격	서가 간 간격은 최소 1.8m로 충분히 확보하여 서가주변의 열람행위 및 그 외의 다양한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배려하며,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출입구		① 장애인이 열기 쉽도록 자동문이거나 일반문일 경우 문손잡이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레버형이나 수평막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여닫이문의 경우 도어체크를 3조 이상 설치하여 닫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② 도서분실방지기를 설치한 경우 도서분실방지기의 유효폭이 0.8m이상이거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열람석		전체 열람석의 10% 이상을 장애인열람석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장애인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마감재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바닥이나 천장 등에 높은 턱이나 기둥과 같은 장애요소가 없어야 한다.*****
서비스 카운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배치하며, 언제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체를 한눈에 총괄하는 자리여야 한다.*****
복도 / 통로		모든 통로는 휠체어장애인을 고려하여 0.8m × 1.2m(가로×세로)의 공간과 회전 시 1.4m × 1.4m의 공간이 필요하다.***
검색대 / 열람석		아랫부분이 폭 0.9m, 높이 0.7m~0.9m, 길이 0.45m~0.6m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전자정보열람실의 검색대의 높이와 컴퓨터 사이의 유효폭도 마찬가지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최서연, **김보일, ***고근재, ****도서관법,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

〈표 6〉 편의시설 기준²¹⁾

구 분		내 용
매 개	주 출입구 및 접근로	주 출입구 및 접근로의 폭은 1.2m×2.1m 이상이며, 바닥재질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고,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① 전체주차구역의 1%로 설치하며,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② 주차장 바닥에는 장애인전용 표시가 설치되어야 하며 공간의 크기는 3.3m×5m 이상이 1대에는 평행주차일 경우 2m×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턱을 낮추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 부	출입구	① 주 출입구의 유효폭은 표준 휠체어 0.63m를 고려하여 0.8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1.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은 되도록 자동문을 설치하며 개폐기 작동장치는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수동문일 경우에는 문 손잡이를 레버형이나 수직 또는 수평막대형으로 설치하여 손에 힘이 없더라도 쉽게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 도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있어야 하며 넘어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 생	계단/승강기/리프트/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는 장애인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최소 1.4m×1.4m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계단만 비치되어 있다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장애인전용 화장실	각 층마다 남녀 각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며大便기의 좌·우측에는 휠체어가 접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소변기와 세면대 양 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한다.***
안 내	점자블록	건물의 주출입구와 각 열람실을 연결하는 보도 또는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도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최서연, **김보일, ***고근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

21) 편의시설영역의 시설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2](일부개정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와 고근재, 전계논문, pp.18-30; 최서연, 전계논문, pp.38-47; 김보일, 전계논문, pp.16-41을 참고하여 제안하였음.

다. 동선체계

법률이나 선행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동선체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모든 자료실을 한 층에 배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시설과 동선, 혹은 장애인전용화장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장애인 시설 및 공간구성의 설치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동선체계에는 건물외부에서 내부로의 동선, 각 자료실과 이동시설의 거리, 각 자료실과 장애인전용화장실과의 거리, 장애인실의 위치와 현관과의 거리, 비상시설의 위치가 포함된다(표 7 참조).

〈표 7〉 동선체계 기준

구분	내용
외부 ⇄ 내부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승강설비나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② 주출입구와 승강기·경사로와 같은 이동시설과의 거리는 최단거리로 배치해야 한다.
각 실 ⇄ 이동시설	장애인실 뿐 아니라 각 열람실과 장애인 전용 승강기/휠체어리프트/경사로 등은 가깝게 설치되어야 한다.
각 실 ⇄ 화장실	장애인실 뿐 아니라 각 열람실과 장애인전용화장실은 가깝게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비상시를 고려하여 1층에 배치해야 한다.
비상시설	장애인실 주변에는 비상시를 고려하여 주변에 대피통로가 있어야 한다.

IV.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 실태분석

이 장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의 장애인현황을 살펴보고, 앞 장에서 살펴본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시설 및 공간구조의 설치기준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실을 설치하고 있는 5 곳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및 공공도서관의 현황

가. 장애인 현황

2008년 6월말에 대구광역시청에서 조사한 '대구광역시 세대 및 인구현황'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511,681명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3월 말에 조사한 등록장애인의 수는 101,637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인구의 약 4%가 장애인이다. 그러나 이는 등록된 장애인의 수만을 산정한 것이며 4월부터 6월까지의 수는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미등록된 장애인의 수를 포함하면 장애인 인구는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²²⁾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를 유형별로 산정한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장애인이 84,674명으로 전체 장애인유형 중 약 84%를 차지하며, 인원수로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장애3급까지는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에서 방문 또는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직접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4~6급 장애인 수는 대략 56,497명(전체 장애인구의 66.69%: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4~6급의 경우 대구광역시 전체 지체장애인 중 39,650명(75.94%)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8,641명(78.84%), 청각장애인 4,996명(56.32%))(표 8 참조)이다. 이러한 4~6급 장애인의 비율은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을 계획할 때 이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 지역별로 장애인 수를 산정한 결과 달서구, 북구, 동구, 수성구, 서구, 남구, 중구의 순으로 많았으며, 대구광역시에서 장애인의 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표 8〉 장애 유형별 현황

구 분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전체	4-6급								
지체장애	52,209	39,650	1,962	7,659	5,701	3,732	10,023	7,542	11,858	3,732
뇌병변장애	11,711	2,780	463	1,688	1,115	1,028	2,016	2,034	2,534	833
시각장애	10,959	8,641	435	1,710	1,242	927	1,851	1,614	2,457	723
청각장애	8,870	4,996	352	1,263	830	709	1,353	1,546	2,146	671
언어장애	810	375	34	176	81	66	124	109	159	61
안면장애	153	55	5	15	12	10	15	18	29	11
누 계	84,712	56,497	3,251	12,511	8,981	6,472	15,382	12,863	19,183	6,031
신장장애	2,466	462	108	330	235	179	393	491	582	148
심장장애	499	11	28	69	46	37	95	87	103	34
간장애	305	134	11	34	31	15	58	76	67	13
호흡기장애	566	0	19	80	57	60	89	112	113	36
장루·요루	531	481	29	82	55	45	93	86	107	34
간질장애	346	187	16	51	49	29	47	54	79	21
정신지체	4,979	1	205	842	467	421	867	687	967	523
정신장애	6,667	0	202	1,330	612	446	1,146	1,020	1,359	552
발달장애	604	0	12	93	37	33	118	97	180	34
누 계	16,963	1,276	630	2,911	1,589	1,265	2,906	2,710	3,557	1,395
총 합	101,675	57,773	3,881	15,422	10,570	7,737	18,288	15,573	22,740	7,426

22)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jc/sjc120304vw.jsp?PAR_MENU_ID=06&MENU_ID=06120304&BOARD_ID=1527&BOARD_FLAG=00&CONT_SEQ=202793&page=1> [인용 2008. 12. 20].

나.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현황

이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9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5곳의 도서관(동부도서관,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수성도서관,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도서관의 일반적인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도서관의 장애인 관련 개괄적인 현황

항 목 \ 구 분	A도서관	B도서관	C도서관	D도서관	E도서관
장애인실개관년도	2000년	1995년	1995년	1983년	1991년
장애인이용자 현황 ²³⁾	관내 940 관외 1,129	관내 436 관외 2,540	관내 100 관외 176	관내추정불가 관외 100	관내 172 관외 542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실은 1991년 E도서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하여 C도서관 1995년, A도서관 2000년의 순으로 개관하였다. 또 2008년 한 해 동안의 관내이용자를 산정하였을 때 도서관의 위치와 주변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수에 따라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관내의 장애인 이용자 수는 각 도서관의 사서가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 실태

이 절에서는 5개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가. 도서관 고유의 영역

(1) 장애인실

장애인실의 설치기준요소에는 면적, 열람석, 출입구, 냉·난방시설, 채광 및 조명, 바닥감재, 보유시설 등이 있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장애인실에 대한 현황을 설치기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23) 2008년 한 해 동안의 이용자수이며, 관내이용자수는 장애인열람실 이용만을 산정하였고, 관외이용자 수는 전체 열람실의 대출현황을 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음.

〈표 10〉 각 도서관의 장애인실 현황

항목 \ 구분	A도서관	B도서관	C도서관	D도서관	E도서관
면적	19.5㎡(10,150㎡)	73㎡(7,395㎡)	47.61㎡(7,533㎡)	21.67㎡(4,612㎡)	52㎡(5,827㎡)
열람석	5석(328)	26석(306)	12석(284)	0석(236)	9석(303)
출입구	자동문	자동문	자동문	여닫이문-나무	자동문
냉·난방시설	○	○	○	선풍기1대	○
채광 및 조명	한쪽벽면모두창문 직관형광등 5	한쪽벽면모두창문 24	한쪽벽면모두창문 18	한쪽벽면상단만창 문 4	한쪽벽면모두창문 20
바닥마감재	PVC ²⁴⁾	PVC	PVC	시멘트	합판마루 ²⁵⁾
보유 시설	잡지서가 1 신문서가 1 독서화상기 검색용PC 프린트기 보청기	6단서가 1대 신문서가 1 독서화상기 음성지원컴퓨터 검색용PC 건강관리기구 휠체어 높낮이조절책상 보청기	5단서가 4대 잡지서가 2대 독서화상기 음성지원컴퓨터 검색용PC 2 프린트기 냉장고 보청기	독서화상기 음성지원컴퓨터 검색용PC 휠체어 보청기	5단서가 2대 테이블서가 음성지원컴퓨터 휠체어 녹음제작실 점자프린트 보청기
명칭 및 기타	장애우열람실 인터폰	노인·장애인실	장애인실노인실	장애인열람실	시각장애인실 실내에 사서

※ ()는 전체면적과 전체열람석의 현황이다.

첫째, 장애인실의 면적은 전체면적에 대비하여 B도서관과 E도서관이 73㎡와 52㎡로 가장 넓었다. 그러나 관내 추정이용자가 연간 940명으로 가장 많으며, 건물 연면적도 가장 넓은 A도서관은 장애인실의 공간이 19.5㎡로 가장 협소하였다.

둘째, 장애인열람석은 B도서관을 제외한 4곳의 도서관들은 전체자료실 열람석의 10%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D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애인열람석이 1석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출입구는 D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자동문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D도서관은 도어 체크가 설치되지 않은 수직손잡이의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넷째, 냉·난방시설은 D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실 면적에 맞는 라지에타나 중앙난방식 냉·난방기구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D도서관은 벽에 선풍기 1대 만이 달려있었다.

다섯째, 채광 및 조명은 D도서관을 제외한 4곳의 도서관은 한쪽 벽면이 모두 창문으로 되어있어 채광이 좋았을 뿐 아니라 환기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D도서관의 경우에는 창문이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면적에 비해 크기도 작았으며, 환풍기 시설도 되어있지 않았다. 또 조명시설도 직관형광등 4개로 가장 적은 수였다.

24) PVC바닥재는 '장판' 혹은 '모노륨' 불리는 것으로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소재의 바닥재임.

25) 합판마루(plywood floor)는 합판을 바탕재로 사용하여 표면에 무늬목을 입힌 것으로, 수분이나 열에 의한 변형이 적으나, 표면이 강하지 못해 긁힘이나 오염, 자외선에 의한 변색·퇴색의 문제점이 있음.

여섯째, 바닥마감재는 대부분 PVC장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D도서관의 경우 복도는 합판마루인데 반해 열람실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다.

일곱째, 보유시설은 저시력자용 독서화상기, 음성지원컴퓨터, 건강관리기구, 높낮이조절책상 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장애인용 특수 장비는 대부분 각 1대씩만 설치되어 있었다. B도서관은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는 책상을 설치하여 휠체어의 높이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B·D·E도서관은 휠체어를 비치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휠체어가 주출입구 근처가 아닌 각 장애인실 내에 비치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 서가는 1대~4대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료는 노인자료나 점자자료가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실의 명칭을 살펴보면 도서관마다 장애인의 범주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과 같은 독서장애인도 함께 묶어 노인·장애인실로 두기도 하고, 일반장애인들을 총괄하여 구분하거나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내부의 시설과 구조를 살펴보면 점자자료, 노인자료,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독서화상기, 음성지원컴퓨터 보유 등 노인과 시각·청각 장애인을 겨냥한 자료실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도서관들은 독립된 장애인실을 설치하고 있었지만, E도서관에서만 실내에서 근무하는 전담사서가 있었고, 다른 도서관에서는 전담사서는 물론 서비스카운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A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인터폰이나 비상벨을 설치한 곳이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CCTV의 설치도 하지 못해 유사시에 장애인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다른 자료실과 연결된 창문으로 사서가 서비스하고 있어 장애인을 격리시키고 감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실은 대체로 면적이 협소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열람석 또한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D도서관의 냉·난방시설, 채광 및 조명, 바닥재, 출입문의 시설은 장애인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유시설 중 대부분이 노인 및 시·청각 장애인 위주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실의 명칭의 다양성, 사서의 부재, 서비스카운터 미설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도서관들에는 장애인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내부의 공간구조와 운영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은 모든 층의 이용자가 열람하는 곳으로, 설치기준요소에는 서가의 높이와 서가간 간격, 출입구의 폭, 장애인열람석, 바닥마감재 등이 있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종합자료실에 대한 현황을 설치기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표 11〉 각 도서관의 종합자료실 현황

항목		구분				
		A도서관	B도서관	C도서관	D도서관	E도서관
서가 (m)	높이	1.8 - 2	1.5 - 2.1	1.8	-2	1.8 - 2
	사이폭	0.75 - 0.77	0.8 - 0.9	0.9	0.9	0.76 - 0.9
출입구 (도서분실방지폭)		여닫이문 - 유리 (0.8m)	여닫이문 - 유리 (0.93m)	여닫이문 - 유리 (입출구 각 0.6m)	여닫이문 - 나무 (0.8m)	여닫이문 - 유리 (0.93m)
열람석 (석:장애인석 / 전체)		1 / 73	0 / 90	0 / 68	0 / 60	4 / 134
바닥마감재		PVC	PVC	PVC	시멘트	PVC
서비스카운터		2개 - 마주봄	1개 - 왼쪽	2개 - 양쪽	1개 - 왼쪽	1개 - 실 외
복도 / 통로		넓음	넓음	넓음	넓음	넓음
검색대(높이, m)		4대(0.92)	3대(0.7)	3대(0.7)	2대(0.7)	3대(1)

첫째, 서가의 높이는 C도서관을 제외한 4곳의 도서관이 최대 2m 높이의 서가를 사용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높이의 서가가 많았다. 또 서가간의 간격은 0.75m에서 0.9m까지로 휠체어가 들어가는 하지만 회전공간의 미확보로 서고에 진입하였을 경우 후진하여 나와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출입구는 대부분 여닫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고, 도서분실방지기의 폭은 0.8m~0.93m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C도서관은 유효폭이 0.6m인 도서분실방지기를 입구와 출구에 각각 설치하여 휠체어가 출입하기 어려웠다.

셋째, 장애인열람석은 A·E도서관만 별도로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A도서관의 경우 접수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점은 있지만 통로중앙에 열람석이 위치하고 있으며, 열람석이 다른 구조물 보다 돌출되어 배치되어 있었으며, 정면에 거울을 붙여 놓는 등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바닥마감재는 대부분 PVC종류를 이용하였고, D도서관만 시멘트로 되어 있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다칠 위험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서비스카운터는 종합자료실입구에서 실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 1곳 혹은 2곳에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E도서관은 종합자료실을 제1실과 제2실로 구분하여 서비스카운터를 제1실과 제2실의 바깥에 위치하여 장애인이 사서에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불편한 위치였다.

여섯째, 복도 혹은 통로부분은 휠체어가 움직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넓었다. 그러나 D도서관은 실내에 기둥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 충돌위험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검색대는 장애인용으로 별도 지정한 도서관은 없었으며,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7m이상으로 이용시 불편함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도서관의 종합자료실은 비장애인 뿐 아니라 전맹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특수시설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휠체어장애인 고려한 서가의 높이, 서가 사이의 간격의 배치 등이 부적합하였고, 복도나 이동 통로에 장애물 등이 있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린이열람실

어린이열람실은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장기적인 고객들의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어린이열람실도 종합자료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요소를 가지고 있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에 대한 현황을 설치기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2 참조).

〈표 12〉 각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현황

구분		A도서관	B도서관	C도서관	D도서관	E도서관
서가 (m)	높이	1.7	1.45 - 1.8	1.5 - 1.8	1.7	1.8 -
	사이폭	0.77 - 0.8	0.76-0.93	0.89 - 0.98	0.7	0.77 - 0.8
출입구		여닫이문 - 유리	미닫이문 - 나무	여닫이문-유리	여닫이문-나무	여닫이문-유리
열람석(석: 장애인석/전체)		0 / 58	0 / 64	0 / 73	0 / 60	0 / 60
바닥마감재		PVC	PVC	PVC	PVC	PVC
서비스카운터		1개	1개	1개	1개	1개
복도/통로		좁음	넓음	넓음	넓음	넓음
검색대(높이, m)		3대(0.7)	6대(0.7)	3대(0.7)	2대(0.7)	6대(0.7)

어린이열람실도 종합자료실과 마찬가지로 서가의 높이와 서가사이의 유효폭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장애인열람석도 없었다. 출입구는 대부분 여닫이문이었으며, 도서분실방지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하였다. 바닥마감재는 PVC종류의 장판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A도서관의 경우 알록달록한 바닥마감재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서비스카운터는 실내에 1개를 설치하여 실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나, 영유아실과 같이 방으로 구분되어있는 장소는 서비스카운터에서 관리가 어려웠다. 통로는 A도서관을 제외한 4곳의 도서관 모두 넓었으나, D도서관의 경우 중앙에 기둥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검색대의 수가 많았고 높이가 0.7m로 이용가능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도 어린이를 고려한 공간구조의 배치는 하고 있었으나, 어린이장애인을 고려한 부가적인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나. 편의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요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따랐으며, 세부적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을 설치기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3 참조).

〈표 13〉 각 도서관의 편의시설 현황

편의시설		구분	A도서관	B도서관	C도서관	D도서관	E도서관
매개	주출입구 및 접근로		경사로 2곳	경사로 1곳	계단	경사로 1곳	경사로 1곳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m:가로×세로)		1 / 14대 (2.05 × 5.25)	1 / 44대 (3 × 5)	3 / 140대 (2.8 × 4)	1 / 88대 (3.3 × 5)	2 / 60대 (공사중)
	주출입구높이차이		×	×	×	×	×
내부	출입구		여단이 - 유리	여단이 - 유리	여단이 - 유리	여단이 - 유리	여단이 - 유리
	복도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승강기/경사로/계단		승강기, 계단	승강기, 계단	승강기, 계단	계단	경사로, 계단
위생	장애인전용화장실		열람실외	열람실내	열람실내	일반화장실내	일반화장실내
안내	점자블럭		○	○	○	○	○
	유도·안내시설		×	×	점자안내판 (승강기, 자동문)	점자안내판 (주출입구) 점자안내 (계단손잡이)	기타유도장치 (리모콘) 전자문자안내
	경보 및 피난설비		×	×	×	×	×

먼저 매개시설은 주출입구 및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의 편의 시설에 대한 기준이다. 주출입구 및 접근로는 C도서관을 제외한 4곳의 도서관에서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B도서관은 도움벨까지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기본 1대 이상으로 전체 주차대수의 1%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지키고 있지만, D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은 3.3m × 5m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또 주출입구 높이 차이는 5곳 모두 제거하였고 장애물도 없어 휠체어장애인이나 보행장애인 모두 출입이 가능하였다.

내부시설은 주출입구, 복도, 승강기·경사로·계단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기준이다. 첫째, 주출입구는 5곳 모두 유리로 된 여단이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복도는 대부분 시멘트로 되어 미끄럽고, 넘어지면 심하게 다칠 수 있었다. E도서관의 건물 내 경사로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PVC바닥재를 사용하였지만 D도서관은 승강기나 경사로도 없고 계단만 있으며, 손잡이는 있었지만 휠체어리프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장애인이 다음 층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

위생시설로 분류되는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전용으로 비장애인 화장실과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비장애인 화장실 내에 한 칸을 장애인전용으로 설치해 놓기도 하였다. A도서관과 B도서관, C도서관은 전자의 경우로, A도서관은 장애인열람실 외부에 위치하고, B도서관과 C도서관은 장애인열람실 내부에 존재하였다. 또 B도서관의 경우에는 온수샤워실까지 만들어 놓는 등 장애

인의 위생시설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반면 D도서관과 E도서관은 후자의 경우로 일반 화장실 내에 자동문을 설치한 장애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들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장애인열람실이 위치한 층이나 주요 층에만 설치하고 있었다. 또 비장애인용 화장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 화장실에 각 1개씩 설치되지만, 장애인전용화장실들은 1개로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불편할 가능성이 있었다.

안내시설은 점자블럭과 유도·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에 관한 기준이다. 점자블럭은 각 열람실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지만 계단과 같이 위험한 지역에 설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경계하는 역할도 한다. A도서관은 주출입구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열람실로 연결된 로비에는 점자블럭이 끊어지고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열람실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주출입구에서 장애인열람실로 가는 길에는 원기둥이 서있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반면 B도서관과 C도서관은 주출입구에서 승강기까지 점자블럭이 이어져 있었고, D도서관과 E도서관도 주출입구에서 장애인실까지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음 유도·안내시설로는 대부분 승강기나 열람실의 자동문에 점자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D도서관에서는 계단의 손잡이가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었다. 또 E도서관은 기타유도장치로서 출입문에 다가가면 장애인이용자가 소지한 리모콘이 반응하여 출입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또한 이 도서관은 도서관로비의 출입구 천장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시설은 5곳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비상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편의시설영역의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생시설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전용화장실과, 점자블럭, 유도·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의 안내시설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 동선체계

동선체계의 기준요소에는 건물외부에서 내부로의 동선, 각 자료실과 이동시설의 거리, 각 자료실과 장애인전용화장실과의 거리, 장애인실의 위치와 현관과의 거리, 비상시설의 위치가 포함된다. 동선체계는 이용자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최단의 동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선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 도서관의 장애인실이 위치한 층의 도면과 층별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각 도서관의 주요층의 도면과 실별 현황

구분	주요층의 도면	층별현황				
		F1	1	2	3	4
A 도서관		시청각실	장애우열람실 · 어린이열람실 · 문학자료실	종합자료실 · 낙육재	디지털자료실 · 정기간행물실	강좌실 · 일반열람실
B 도서관		시청각실	노인/ 장애인실 · 어린이/ 모자실 · 전시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 정기간행물실	논문자료실 · 일반열람실
C 도서관		-	시청각실 · 전시실	노인/ 장애인실 · 어린이자료실	도서종합자료실 · 연속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 일반열람실
D 도서관		시청각실	장애인실 · 전시실 · 어린이실 · 정기간행물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실 · 일반열람실	-
E 도서관		시청각실	시각장애인실 · 어린이실 · 모자열람실	디지털자료실 · 정기간행물실 · 여자열람실	종합자료실 · 남자열람실	-

조사대상 도서관의 동선체계에 대한 현황을 설치기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물의 외부와 내부의 이동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C도서관과 D도서관이 건물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특히 D도서관은 정문과의 거리도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

되어 있었다. 그러나 A도서관과 B도서관은 건물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거리가 더 멀고 가는 중에 다른 차와의 충돌 등 위험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각 실과 이동시설의 동선체계는 모든 조사대상 도서관이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등을 2-3층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표 14의 층별 현황 참조). 이동시설과 주출입구의 거리는 B도서관과 C도서관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 가장 짧았으며, A도서관은 주출입구와 최장거리지만 장애인실과는 최단거리였다. E도서관의 경사로는 주출입구와 가장 멀었으며, D도서관은 다음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휠체어장애인과 보행장애인이 다음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를 하나 이상씩 설치하고 있었다.

셋째, 장애인실과 화장실의 동선은 열람실 내에 전용화장실을 설치한 B도서관과 C도서관을 제외하고 D도서관과 E도서관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A도서관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넷째, 장애인실의 동선체계의 경우, A도서관과 B도서관은 장애인실이 주출입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C도서관은 2층에, D도서관과 E도서관은 타열람실 내에 장애인실이 위치하여 2개의 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표 14 주요층의 도면 참조).

다섯째, C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은 장애인실을 1층에 위치시켜,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편의는 물론 유사시에 빠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장애인실의 위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빠른 대피를 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 또한 필요하다. D도서관은 장애인실과 가까운 곳에 뒷문을 설치하여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도서관이 대부분 80-90년대에 건축된 건물로 급박하게 개관시점에 맞춰서 혹은 법정 최저기준이나 예산에 맞춰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려한 동선체계를 고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종합적 분석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고유영역에서 장애인실은 시설이 미비하였으며, 전담사서나 서비스데스크가 없는 등 운영 또한 미흡하였다.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열람실 역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공간배치가 부족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치된 장애인실을 별도로 배치하기보다는 각 실마다 장애인열람석과 검색대, 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수장비들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열람석을 배치할 때 서비스데스크, 주출입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되 통로의 중앙과 같이

시선의 집중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실 시설은 대부분 노인 및 시·청각장애인을 고려한 것이므로 장애인전체를 지칭하기보다는 노인 및 시각장애인실 혹은 노인 및 점자자료실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셋째, 편의시설 영역은 5곳 모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구분기준을 이용하였지만 경보 및 피난시설을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또 주차구역의 부족, 복도의 바닥마감재의 위험성, 유도 및 안내시설의 미비 등은 여전히 장애인 중심의 시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장애인은 장애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정상인보다 빠른 대피가 어려우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및 비상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동선은 모든 상황에서 최단거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실의 위치가 건물 한쪽 구석에 위치하여 찾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이동시설, 출입구, 기타자료실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의 이동이나 안내표시 등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의 현황은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장애인들은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혼자 외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제한된 공간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와의 단절과 외로움으로 마음의 병을 앓게 되기도 한다. 물리적인 장애로 인해 마음의 장애까지 앓고 있는 장애인들은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실을 설치하고 있는 5곳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시설 및 공간구조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의 열람석에 관한 규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 외에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법률은 미비하기 때문에 도서관 고유의 서비스영역과 관련된 시설들은 각 도서관마다 다양각색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루 빨리 도서관 고유 영역으로서의 특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연구·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설 및 공간을 도서관 고유영역, 편의시설영역, 동선체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향후 점차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자료실, 문화강좌실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 및 공간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측면에서의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및 일반인을 위해 국내 출판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활자본의 서가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각종 문화강좌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는 등 공공도서관을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